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춘기)

가. 제출이유

- 현재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정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임용자격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코자 하며, 임용자격기준 중 미비하였던 표기를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별정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임용자격기준 신설(안, 제4조제3항 관련, 별표 1)
- 임용자격기준 중 “아동복지지도원”을 “아동복지지도원”으로 미비하였던 표기 사항보완 개정(안, 제4조제3항 관련, 별표 1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
- 동 조례안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, 아동의 일시보호 및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,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“서울특별시·직할시·도와 구시군에 각각 1인 이상의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야 한다”고 규정되어 있음.
- 현행 8급 아동복지지도원 외 7급 직원을 신설하여 아동의 건전한 출생 및 복리보장을 위한 유능한 인력의 확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문(김유현 위원장) : 아동복지지도원 별정7급 임용자격기준 신설은 정원 조정인가?
- 답변(이춘기 총무과장) : 아닙니다. 현 별정8급을 7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.
- 질문(김유현 위원장) : 임용자격도 전문대학에서 학사로 격상되는 것이 맞는가?
- 답변(이춘기 총무과장) : 그렇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2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시 : 1994. 8. 30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현행 우리 구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정7급 상당 아동복지지도원 임용자격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코자하며, 임용자격기준중 미비하였던 표기를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개정골자

- 별정7급 상당 아동복지지도원 임용자격기준 신설(안, 제4조제3항관련, 별표 1)
- 임용자격 기준중 “아동복지지도원”을 “아동복지지도원”으로 미비하였던 표기사항 보완 개정(안, 제4조제3항 관련, 별표 1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4. 3. 16. 법률 제4741호) 제15조
- 아동복지법(1981. 4. 13. 법률 제3438호) 제6조제2항
- 아동복지법시행령(1993. 8. 30. 대통령령 제13968호) 제3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필요성 : 예산조치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 1)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호 중 “3. 부녀청소년, 아동복지분야”를 “3. 부녀청소년, 아동복지분야”로 하고, 동호 직명(위) 및 업무구분란 중 “아동복지지도원(청소년지도원)”을 “아동복지지도원(청소년지도원)”으로 하며, 아동복지지도원(청소년지도원)란에 7급상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직명(위) 및 업무구분	직급	직무내용	임용자격	근거
아동복지지도원 (청소년지도원)	7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• 아동의 일시보호 •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• 청소년문제지도 상담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 학위 소지자 2.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(8급상당)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3. 국민학교 또는 중·고등학교교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	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<별표 1>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

현					개				
3. 부녀청소년, 아동복지분야					3. 부녀청소년, 아동복지분야				
직명(위) 및 업무구분	직급	직무내용	임용자격	근거	직명(위) 및 업무구분	직급	직무내용	임용자격	근거
아동복지 지도원 (청소년 지도원)		신 설			아동복지 지도원 (청소년 지도원)	7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• 아동의 일시 보호 •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• 청소년문제 지도 상담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분야 <u>관련학과 학사학위</u> 소지자 2.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 (8급상당)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. 국민학교 또는 중·고등학교교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	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
	8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• 아동의 일시 보호 •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• 청소년문제 지도 상담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2년 이상 당해분야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예 종사한 자 3. 고등학교졸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	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		8급 상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• 아동의 일시 보호 •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• 청소년문제 지도 상담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 당해분야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예 종사한 자 3. 고등학교졸업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	